

**2022년 농업협동조합(농업경제)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2. 1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I. 감사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감사)의 규정

- 2022년 감사업무 추진계획(2022.1.7. 차관결재)

□ 감사목적

- 농업협동조합(농업경제 부문)의 기관운영·예산집행·업무추진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토록 하여 농협의 운영 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에 기여

□ 감사대상

- 농협경제지주(주)(농업경제 부문),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19~'21년)의 기관운영 및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 부문, 최근 2년간)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간) 2022. 6. 20. ~ 7. 15.
- (인원) 감사담당관 외 6명

II. 감사 결과

1	조합원 가입 출자금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관계기관	◆◆농협

- 「정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은 100좌 이상(1좌 금액 5천 원, 500천 원 이상)을 출자하고,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이 없어야 하나,
- 「정관」과 다르게 가입 신청자에게 기존 조합원 평균 출자금액(550만원)의 절반 수준인 300만 원(600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안내 후 가입하도록 하여 영세 농업인의 조합원 가입 제한

◆◆농협

「정관」과 다르게 최저 출자좌수를 자의적으로 높게 안내하여 농업인들의 조합원 신규 가입을 제한한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2	사망 조합원 당연탈퇴 등록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등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 사망으로 인한 탈퇴 조합원이 연 평균 7,335건(전체 탈퇴 사유의 6.5%)에 해당함에도 연 1회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과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고, 면세유 배정량 회수 등의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 초래

농협중앙회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지급 지연 방지, 면세유 배정량 회수 등을 위해 조합원 관리시스템에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연계하는 등 사망 조합원을 실시간으로 당연탈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3	약정조합원 운용 부적정 및 배당 우대 미흡		
처분요구	개선(2), 통보(3)	관계기관	☆☆☆☆부, ♠♠♠♠부, ◇◇농협,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따라 약정조합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약정조합원의 범위 등을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에 따라 들갯잎을 출하하는 조합원과 약정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출하선급금을 6개월 무이자로 지원하여야 하나,
 - ◇◇농협은 약정조합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출하선급금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으며, 출하선급금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비조합원에게도 지급하고 있어 출하선급금을 무이자 지원을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이사회에서 ‘이용고배당 대상사업 및 배점(안)’을 의결하면서 약정조합원에 대한 배당 우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①③ ◇◇농협, △△농협, ② ◇◇농협, ④⑤ 농협중앙회

①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요구 (개선)

②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출하선급금 무이자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 요구 (통보)

③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약정조합원에게 사업이용실적 배당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사회를 통해 우대 내용을 정하도록 요구 (통보)

④ 전체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정관」에서 정한 약정조합원 관련 규정과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혜택을 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별로 교육 요구 (통보)

⑤ 지역 농축협에서 약정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 관련 업무를 조합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개선)

4	조합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농협,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사업 이용을 유도하고,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농협은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160명)에게 소식지·사업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소극적 조치만 하고 농협법에 따른 제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유지

- ◎◎농협은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7명)에게 소식지·사업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농협법에 따른 제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유지

□□농협, ◎◎농협

- ①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에 대한 자격 검증 후 무자격 조합원에 해당될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탈퇴 처리 요구 (통보)
- ② 조합원이 조합사업 미이용 사유로 제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5	대의원회 구성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 「정관」 제46조에 따라 조합은 대의원회를 구성할 때 조합원 수(여성 조합원 포함)에 비례하여 대의원(여성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구역별 대의원 수를 정하지 않아 대의원 1명당 조합원 수가 6배에서 31배까지 차이 발생
 - ◎◎농협은 여성 조합원 수를 감안하지 않고 여성 대의원을 1개 선출 구역에서 1명만 선출

□□농협, ◎◎농협

□□농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대의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의 수를 선거구별 조합원(여성조합원 포함)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조치 (통보)

6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의 장기 지정 관리 미흡		
처분요구	권고	관계기관	●●●●●●부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부실예방업무의 처리 기준과 내용」에 따른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111개)을 지정·관리하면서 장기 지정 조합을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 경영평가 등 평가업무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치 (감점항목 추가 등)를 취하지 않아 11개 조합을 지정한 후 10년 이상 대상조합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음
- ※ 최근 3년간(2019~2021년) 평가업무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개 조합이 종합경영평가 및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 조합으로 선정

농협중앙회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 후 장기간 관리되고 있는 조합에 대해 부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요구 (권고)

7	경제사업 이행 평가 관련 내부규정 미흡 및 의무사항 미이행		
처분요구	기관주의, 개선	관계기관	☆☆☆☆부,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 및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경제사업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 중앙회는 자체 수립한 방침에 따라 경영개선 요구를 하기 전에 권고를 통해 경영개선을 지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경영상태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조치 결과를 총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나,
- ♣♣♣♣농업협동조합은 경영개선 권고를 2021. 02. 24. 통보받았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총회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함

① ♣♣원예농협, ② 농협중앙회

① 경제사업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개선 권고를 통보받고도 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농협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② 경제사업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할 경우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의 근거를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마련 요구 (개선)

8	제규정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배포하는 조합 규정례(모범안·예)을 참고하여 조합 실정에 맞게 필요한 제규정(규약, 규정, 준칙, 업무방법)을 제정·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 「인사규정」, 「하나로마트업무취급준칙」 등 중앙회 모범안·예를 자체 제규정으로 간주하고, 이사회에서 중앙회 모범안 재·개정 문서 그대로 상정·의결*하는 등 자체 제규정을 제정·개정하지 아니함

* 22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제23호 의안: 우선출자규정(모범안) 일부개정 승인 건

▲▲▲▲농협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조합 규정레집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자체 제규정을 제정하도록 조치 요구(통보)

9	외부강사 강의료 등 지급기준 미비		
처분요구	기관주의, 개선	관계기관	☹☹☹☹원

- 「교육규정」에 따라 외부 초빙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 외부 초빙강사에 대한 강의료, 원고료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19년부터 외부강사 40명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1회당 최소 550천 원, 최대 4,400천 원을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지급

농협중앙회

- ① 외부 초빙강사에 적용할 강의료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원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 ② 관련 내규 및 개별 교육방침에 외부 초빙강사에 대한 합리적 강의료, 원고료 등 대가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개정 요구 (개선)

10	직원 순환배치 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농협

-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은 동일 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동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 직원 6명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동일 사무소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으며, 직원 18명은 동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고 있음

◇◇농협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 요구 (주의)

11	직원 채용절차 이행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채용준칙」에 따라 기능직 이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심사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생략(서류확인 필수) 가능하지만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10배수 초과 시에는 서류심사를 하여야 하나,
- 2021년도 3회에 걸친 기능직 직원 3명 신규채용 시 해당 인사위원회 모두 별도 서류심사 이행요건 명시 없이 서류심사를 실시한다고 의결하고도 인사 담당자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서류만 확인하여 채용

▲▲▲▲농협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 이행요건 등 인사위원회 의결, 공고문 등에 따라 채용절차를 이행 조치 요구 (통보)

12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통보	관계기관	◇◇농협

- 「2021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행사비성 예산은 행사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 행사비성 예산을 집행하면서 ‘근로자의 날 전 사업장 휴무 및 행사비 지급’에 따라 직원에게 행사비 6,720만 원을, ‘창립기념일 기념품비 지급’에 따라 직원에게 기념품비 5,6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에게 자녀학자금, 경조금, 복지연금 등 정해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 임원보수 규약에서 정해진 않은 업무능력 개발비, 채용 행사비, 창립 기념일 기념품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근 3년간 12회에 걸쳐 지급

◇◇농협

- ① ◇◇농업협동조합장에게 「2021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어겨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요구 (경고)
- ② 비상임 조합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근거 규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항목을 신설하도록 개정 조치 요구 (통보)

13	공사계약 지체상금을 적용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나,
 - 보조금(국비 30%, 지방비 30%)이 지급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국가·지방계약법상의 1천분의 0.5가 아닌 계약사무처리준칙의 1천분의 1.0으로 계약 체결
 - *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계약법은 2016. 11월, 국가계약법은 2017. 12월 지체상금률을 현재의 기준으로 완화(기존 기준의 2분의 1 수준)

◆◆농협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절차를 추진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요구 (통보)

14	고정자산 관리규정 및 회계처리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2), 개선	관계기관	☆☆☆☆부, ▲▲▲▲농협, ◆◆농협

-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및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라 본점 고정자산을 임대할 경우 독립채산제에 따라 본점 수익으로 계산하거나, 지사무소 수익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을 이수관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본점 일부를 임대하면서 이수관 절차 없이 하나로마트 등으로 임대료를 이관하고 하나로마트의 영업이익을 커지도록 하는 등 독립채산제를 준수하지 아니함

- 「회계업무방법」에 따라 본점 건물을 본점과 지사무소(파머스마켓)가 함께 사용할 경우 전속관리비는 사무소 단위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나,
 - ◆◆농협은 지사무소(파머스마켓)가 본점 건물 내 지하에 입점·사용함에도, 전속관리비(건물 감가상각비, 연 399,292천 원)를 본점에만 계산하는 등 전속관리비를 지사무소 단위에 구분 계산하지 아니함
-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라 고정자산 임대·임차 시 당초 보증금, 월세를 모두 적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나,
 - 「고정자산관리규정」을 개정(2015.07.23.)하면서 보증금만 검토하도록 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월세가 발생하여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여 잘못된 계약 체결로 조합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① ▲▲▲▲농협, ② ◆◆농협, ③ 농협중앙회

① 「고정자산관리규정」과 다르게 본점의 고정자산을 임대하면서 독립채산제에 따라 본점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수관 절차 없이 지사무소 수익으로 계산한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②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회계업무방법」과 다르게 본점의 고정자산을 임대하면서 본점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수관 절차 없이 지사무소 수익으로 계산하였고, 전속관리비를 사무소 단위에 구분 계산하지 않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③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일선 조합에서 임대 및 임차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 요구 (개선)

15	농기계 및 농약 계통공급 가격 결정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부, △△농협

○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농기계 계통공급 가격을 실비주의 원칙으로 구입가격, 공급제비용(보관료·보험료 등), 취급수수료를 감안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 계통공급 가격을 구입가격, 공급제비용 등을 감안한 객관적 기준(구입가격 대비 상한선 설정 등) 없이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일부 기종(5개)에서 구입가격에 비해 과다(142%)하거나 시중가격과 차이가 없는 등 조합원의 영농비 절감이라는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 트랙터 64마력: 구입가격 26,940천 원, 공급가격 38,320(구입가격의 142%)

○ ‘2021년 계통농약 대농민 공급가격 제안의 건’에 따라 농약 판매 마진율은 실구매원가(인수가격 - 장려금)에 공급실비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평균 마진율은 9%~10%로 정하여야 하나,

- 2011년 계통공급 농약 마진율을 가격제안 문서에서 정한 마진율(10%)보다 높은 11.84%로 정하였고, 2022년 마진율(듀알골드 21.21%, 바스타 4.17% 등)도 높게 정하여 조합원에게 부담 가중

① 농협중앙회, ② △△농협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 대표이사에게 농기계 계통공급 가격 결정 시 구매가격에 대한 상한선 설정, 동일한 공급제비용 적용 등 영농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공급가격 결정 방안 마련 조치 요구 (통보)

②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조합원 대상으로 판매하는 농약 가격 마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 요구 (통보)

16	농업용 면세유 관리 미흡		
처분요구	시정, 통보(3)	관계기관	×××××부, □□농협, ◎◎농협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라 중앙회는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개최(반기별)하여 면세유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나,
 - 코로나 확산 등의 사유로 2020년 이후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면세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견수렴 등을 미 실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트랙터·콤바인·난방기 등에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업인은 사용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를 부착하고, 조합은 시간계측기 가동시간을 확인 후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하나,
 - 지역농협에 시달한 「2021 면세유류 업무안내」에 시간계측기가 고장 났더라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면세유 사용 실적에 따른 공급을 어렵게 함
 - □□농협은 농업기계(106대)에 부착된 시간계측기가 고장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수리·교체 등 면세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농업기계에 면세 경유(136,442리터) 공급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매 홀수년도 11월) 신고하고, 전년도에 면세유를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6개월 주기로 지역농협에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농협은 2021년에 면세유를 1만 리터 이상 공급받은 41농가 중 22농가만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고, 나머지 19농가는 제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농협은 2021년 일제신고를 통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된 농업기계를 전산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공급 관련 제신고 관리를 미흡하게 하여 면세유(492리터)를 잘못 배정

①② 농협중앙회, ③ □□농협, ④ □□농협, ◎◎농협

①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농업경제 대표이사에게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면세유의 공급 및 배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견수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치 요구 (통보)

②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문서 변경, 장치의 수리 및 교체 등 대안 마련 요구 (통보)

③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가 정상 기능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등 현장 지도 강화 요구 (통보)

④ □□농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면세유 제신고 중 전산에 잘못 반영된 내용 수정, 잘못 공급한 면세유 회수 조치 요구 (시정)

17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 보	관계기관	◎◎농협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센터의 기술인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과 수리보조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 ◎◎농협 ★★지점 수리센터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1명만 확보하고 수리보조원은 없는 상태이며, 자격을 갖춘 직원은 농기계 수리업무와 비료 업무를 겸직하고 있음

○○농협

○○농업협동조합장은 사무분장 조정, 신규 기술인력 채용 등을 통해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에 맞게 확보하도록 요구 (통보)

18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미흡		
처분요구	권고, 통보	관계기관	■■■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역조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나,
 - 지역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이 미흡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합원에 대한 연평균 판매금액은 8,429억 원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은 5,385억 원(63.9%)으로 저조하였고 미환급 매출액 3,044억 원에 대한 세액 304억 원은 농업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함

농협중앙회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 대표이사에게 부가가치세의 분기별 환급 신청 누락 방지, 계좌번호 수집 등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통합시스템을 보완 조치 요구(권고)

② 조합으로 하여금 최근 5년간 미환급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세액을 파악하고 미환급액을 농업인에게 환급하도록 필요한 조치 요구 (통보)

19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계약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재배이력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고, ▽▽▽▽부는 참여인삼농협 등의 사업추진, 지원조건 이행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 ▽▽▽▽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 인삼농협 계약재배 농가(3명)의 인삼에서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함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 대표이사에게 인삼 계약재배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검사 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요구 (통보)

20	채소수급안정사업 계약 위반농가 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부

- 「채소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에 따라 계약재배 농가가 계약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구성하는 '위약금면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출하불능 물량이 발생한 계약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출하불능 물량이 14.1% 발생하였고 품목별로는 가을무 80.0%, 봄무 64.3%에 달하여 노지채소 수급안정이라는 사업취지 달성이 어려움

농협중앙회

① 효율적인 계약재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약금면제심사위원회에서 상습적인 출하불능 농가에 대해 재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 개정 요구 (개선)

②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부과받은 농지에 대해 위약농가와 타인간 위약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계약위반 농가의 허위 타인 명의 재계약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절차 마련 요구 (통보)

21	두류계약재배사업 평가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2021년 두류계약재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수추진 사례에 대한 평가는 참여농협이 제출한 사례를 관할 지역본부에서 가점 부여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이를 ○○부가 최종 확인하여야 하나,

* (5점) 타 농협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타 농협 대상 홍보 가능, (3점) 타 농협 기 실시 또는 1회성 성과 시, (1점) 우수사례 전파 곤란 시

- 우수추진 사례를 제출한 4개 농협 모두 5점 만점으로 최종 평가하였으나, 내용이 계약재배사업 참여, 학교 급식 및 군납 연계 납품, 재배 농가 공동방제 추진 등 만점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데 별도 검토·확인 없이 지역본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등 담당자가 소극적 업무 처리

농협중앙회

우수사례 평가 시 담당자가 소극행정을 하지 않도록 타 참여농협 실시 여부, 추진 효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 평가 요구 (통보)

22	왕겨숯 판매단가 불합리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은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을 위해 최대한 봉사하고,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하나,
 - 왕겨숯을 판매하면서 조합원 판매가격을 일반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조합원이 일반 고객보다 비싼 가격에 왕겨숯을 구매
- * 2021년(조합원 14,000원, 일반 12,000), 2022년(조합원 15,000원, 일반 12,000)

△△농협

조합원에 대한 왕겨숯 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23	하나로마트 재고조사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부, ○○농업협동조합

- 「복무규정」 및 「직제준칙」에 따라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 하나로마트앱에 대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평점이 저조하며, 사용자 리뷰 509건 중 시스템 관련 불만이 대부분임에도 해명 또는 사과 답변이 없었고 시스템 개선 등 조치 소홀
- * 앱 평가(2022. 07. 15.): 구글 별점 3.2점(2022. 06. 20. 주간, 2.9), 애플 별점 1.5점
- 「하나로마트업무취급준칙」에 따라 하나로마트 상품의 재고조사는 매

분기 중 1회 이상 사무소장이 해당 품목 담당자 이외의 자로 조사자와 확인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 ○○농협은 하나로마트 농산상품 및 정육상품 재고조사 시 해당 품목 담당자를 조사자와 확인자로 지정·실시하는 등 재고조사 업무 부적정

① 농협중앙회, ② ○○농협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 대표이사에게 하나로마트앱 관련 개선 의견 및 불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명·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② 하나로마트 상품 재고조사 시 해당 품목 담당자 이외의 자를 조사자와 확인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자체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요구 (통보)

24	회수불능채권 상각절차 이행 미흡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 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해 회수가 불가능한 정리대상 채권(추정손실)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각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 ◆◆농협은 회수가 불가능한 정리대상 채권 13건 101,573천 원에 대하여 상각절차 미이행

□□농협, △△농협, ◆◆농협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리대상 채권의 상각절차를 실시하도록 조치 (시정)

25	기업시설자금 여신한도 산정 부적정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농협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기업시설자금 여신은 소요시설자금의 80% 범위 안에서 시설자금한도 산정표에 의한 여신가능금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하나,
- 농협은 기업시설자금대출 3건 890,000천 원에 대해 시설자금한도 산정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업시설자금 한도산정 처리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상기의 채무자에 대해 시설자금 한도산정을 실시하도록 조치 (시정)			

26	외국환 거래 정정업무 취급 부적정		
처분요구	통 보	관계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농협

- 「조합외국환업무방법」에 따라 외국환매매 거래 실행 이후에는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정정은 불가하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정정 후 정당거래 시에는 당초 거래 회차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 농협은 외국환 거래 4건에 대하여 직원의 실수로 인한 정정거래 후 당초 거래 회차의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 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 외국환 거래 정정업무 취급 소홀

□□농협

「조합외국환업무방법」에 따라 외국환 거래 정정업무 취급 시 당초 거래 회차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조치 (통보)

27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임의처분각서 징구 미흡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농협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담보대출 취급 시 미등기 건축물이 내구성이 없고 독립된 건축물로서 가치가 적은 경우(비닐하우스, 간이창고 등)에는 임의처분 각서(확정일자 필요)를 징구하여야 하나,
 - □□농협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1건의 대출금에 대해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임의처분 각서 미징구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임의처분 각서 징구 및 확정일자를 득하도록 조치 (시정)

28	기업여신 정기신용평가 미흡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 및 기업신용조사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등급 유효기간 이내에서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징구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 ▲▲▲▲농협은 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 기업 신용조사 대상 개인사업자 26건, 55,816,436천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

◎◎농협, ◆◆농협,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타 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 기업신용조사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여신 정기신용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 (시정)

29	기업운전자금 여신 자금용도 사후점검 미흡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농협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기업운전자금 여신은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채무자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고, 자금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 자금용도의 유용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나,
- ◎◎농협은 기업운전자금 여신을 취급하면서 1건 400,000천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여신 취급 후 채무자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 점검 미실시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기업운전자금 여신의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 (시정)

30	특수채권 소멸시효 관리 미흡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농협

-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특수채권은 소멸시효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않으며, 매월 말 기준으로 시효완성 전 3~4개월 사이에 소멸시효완성일이 도래하는 특수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특수채권 포기 승인신청을 하고 포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에 채권포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농협은 소멸시효가 완성 및 도래되는 특수채권 4건, 1,704천 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채권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수채권 소멸시효 관리업무 소홀

○○농협			
「채권관리업무방법」에 따라 특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 및 도래되는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채권포기 절차를 실시하도록 조치 (시정)			

31	신용보증서대출 보증채무 이행 청구 미흡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농협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채무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보증기금에 즉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부터 신청하여야 하나,

- △△농협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서 담보대출 1건 10,000천 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연체채권 정상화를 위한 신용보증서대출 보증 채무 이행 청구를 실시하도록 조치 (시정)

32	중점관리대상 대출금 사후관리 미흡		
처분요구	시 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공동대출 및 후취 조건부 건물담보(나대지 사용승낙 또는 나지담보 취득 후 건물후취담보 대상 포함) 대출금은 중점관리 여신으로 등록하고 매분기 1회이상 사업실태, 용도유용 여부 등 채무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출금관리부 및 채무자 실태조사 내용을 비치하되, 관리내용을 전산등록한 경우에는 대출금관리부는 전산원장으로 같음하고, 채무자 실태조사 내용을 비치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공동대출 및 후취 조건부 건물담보 대출 15건, 13,467,000천 원에 대하여 중점관리 여신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 소홀

△△농협,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대출금 채무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조치 (시정)

33	농축산경영자금 취급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시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의 대출 가능금액은 소요경영비(농가당 10백만 원) 이내로 하되, 소요경영비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 영농 확인서류에 기재된 영농규모(작목·면적 등)를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산출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객관적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와 대출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재배작목 및 경작면적을 임의로 입력·심사하여 적정 용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45건, 154,436천 원)

① ◎◎농협 ②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①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을 부적정하게 이행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 (주의)
- ② 부당하게 취급된 농축산경영자금 154,436천 원에 대해 검사일로 소급하여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시정)

34	농업종합자금 용자한도 초과 및 취급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시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라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산출된 대출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나,

- ○○농협은 사육두수, 재배작목, 경작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높게 산출하여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10건, 95,930천 원)
- 경작면적 감소, 경제사업채권 증가 등으로 기존 운전자금의 전액 대환이 불가능한 경우 '1회전 소요운전자금' 금액과 '대환 대상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90%'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대환·재대출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1회전 소요 운전자금 산출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와 대출상담 결과로 재배작목, 경작면적을 임의로 입력하여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17건, 178,888천 원)
-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계열주체로부터 가족,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나,
 - △△농협은 운전자금을 지원하면서 완전계열화 참여농가로 자금 지원 제외대상자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 취급(4건, 309,000천 원)

① ○○농협 ② ○○농협, △△농협, ◆◆농협

①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과 다르게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의 용자한도를 초과하고 지원 비대상 등 정책자금을 부적정하게 취급한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기관주의)

② 부당하게 취급된 농업종합자금 583,818천 원에 대해 검사일로 소급하여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시정)

35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안내·상담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운전자금 수요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소요 운전자금에 따라 결정되는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담 요원은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나,
- ▲▲▲▲농협은 농축산경영자금을 농업경영체당 대출한도인 1천만 원 내에서 대출(24건)하고 있으나, 대출한도가 소요 운전자금에 따라 결정되는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의 안내·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대출 2건,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24건

▲▲▲▲농협
<p>농업종합자금 상담요원을 지정한 후 농업종합자금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체가 대출을 희망할 경우 농업용 자금 유무를 파악하여 관련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상담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조치 (통보)</p>

36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 초과 및 취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농협

-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신축한 주택의 연면적이 150㎡(주거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 ◆◆농협은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아 대상 주택의 건물감정평가금액 내에서 대출하지 않고 대출신청금액 전액을 대출하여 융자한도 초과하여 대출(4건, 70,692천 원)
- ◎◎농협, ◇◇농협은 신축 주택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여 융자지원 제외대상인데도 부적정하게 대출 취급(3건, 217,870천 원)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부당하게 취급된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금 초과취급액 288,562천 원에 대해 검사일로 소급하여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시정)

37	농촌주택개량자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유 발생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 「NH농협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라 사업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등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사업자(4명)가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받아 신축한 주택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숙박시설 및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농협, ◆◆농협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부정수급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시행기관 회신 내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하도록 요구 (통보)

38	귀농인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 발생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농협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귀농인이 사업포기,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보유, 용자금을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 ◆◆농협은 귀농인(4명)이 농업이 아닌 타 산업 분야의 전업적 직업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 영농을 포기하여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회신내역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농협은 귀농인(1명)이 농촌 사업을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고,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인 '말을 통한 체험농장 사업'과 다르게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농협, ◇◇농협, ◆◆농협

귀농창업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타직업 보유, 농업경영체 미등록, 목적 외 사용 등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귀농인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시행기관 회신내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하도록 요구 (통보)

39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 발생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농협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이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각,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는 등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후계농업경영인(2명)이 후계농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를 전부 매도하거나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제외(2021.04.27.)' 되는 등 영농을 포기하여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회신내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농협은 후계농업경영인(1명)이 농지구입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해당 필지를 대지로 지목변경(2019.07.25.) 한 후 인삼제조 판매시설(보승인삼사)과 베이커리카페(삼사카페) 부지로 활용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

◆◆농협, ▲▲▲▲농협

후계농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지 매도, 농업경영체 미등록, 목적 외 사용 등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귀농인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시행기관 회신내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하도록 요구 (통보)

40	보조금이 수반된 지원시설 타기관 담보 제공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농협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수반한 시설에 대하여 타기관 앞 담보 제공 등 부정수급사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농협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1명)가 보조금이 수반된 시설에 대해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타기관 앞 담보로 제공하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농협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승인 없이 타기관에 담보 제공을 하는 등 부정수급사유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부정수급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시행기관 회신내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하도록 요구 (통보)

41	대손보전금 구상채권 미회수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부, ◎◎농협, ▲▲▲▲농협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에 따라 구상권에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관계자의 조합원 탈퇴로 탈퇴지분이 발생할 경우 탈퇴지분과 대손보전 구상채권(선순위 대출채권 상계 후)의 상계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기금 관리기관(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에 납부하여야 하나,
 - ◎◎농협, ▲▲▲▲농협은 사업자(2명)의 해당 농협 조합원 탈퇴로 발생한 탈퇴지분과 대손보전 구상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사업자 및 배우자에게 입금하여 구상권 행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4건, 9,792천 원)
 - ☆☆☆☆부는 ‘조합원시스템’을 통하여 조합원 관리(탈퇴 등)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권담당자가 조합원의 탈퇴 사실 또는 탈퇴 조합원에 대한 채권 및 구상권(대손기금 구상채권 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조치(구상권 회수 등) 없이 탈퇴 지분을 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별도의 대책이 없음

① ◎◎농협, ▲▲▲▲농협 ② 농협중앙회

① 대손보전 구상채권 미회수액 9,792천 원에 대해 농협은행 대손보전 기금부에 납부하도록 조치 (시정)

② 조합원이 탈퇴하여 발생한 탈퇴지분 환급 시 팝업창 등의 기능을 통해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되지 않게 하는 등의 전산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통보)

42	폐은박반사필름 수거사업 추진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관계기관	▲▲▲▲농협

- 사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수확기에 착색을 목적으로 농업용 은박 반사필름을 사용한 후 불법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에 따라 유해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특수폐기물로 분류되는 은박반사필름을 수거하기 위하여 ♠♠시에서 40%를 부담하고, ▲▲▲▲농협과 ♠♠사과발전협의회에서 60%를 부담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도출
- ▲▲▲▲농협은 8억 원 비용을 부담하여 2007년부터 매년 300여 톤의 은박반사필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 조합, 농업인, 지자체가 뜻을 모아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도 전파되어 은박반사필름 처리를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 등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농협

농업용 은박반사필름 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 및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요구 [통보(모범사례)]

43	농업정책자금 관리 철저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관계기관	◇◇농협

- 농업정책자금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출취급기관은 대상자의 사업장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담보 취득 등의 채권 보전조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귀농 및 창업농 증가에 따라 가공·판매·체험 등과 연계되어 사업자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농협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주관기관의 발급문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을 통하여 대상자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사업장 및 사업내용을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협출하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매년 귀농창업사업자(98건) 및 후계농업인사업자(94건)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보험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는 등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농촌주택지원사업자(336건)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매도 등 소유권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사업소와 연계하여 농기계지원사업자(315건)의 농기계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농업정책자금관리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농협

농업정책자금을 관련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 요구 [통보 (모범사례)]